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는 제43조에 따라 임대임대기간 내 주택 매각 금지의무,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등록주택 현황과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사업자별 주택 보유호수, 주택 유형 등의 세부적인 통계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정보체계 운영 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 무 총 리 이 낙 언

국 무 위 원 김 현 미
국토교통부 장관

●법률 제1532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제6조제5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월 10일까지”를 “지체 없이”로 한다.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현황 등 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리거나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중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며,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가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는 한편,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기존 농·어촌에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함 (제3조).

-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제6조제5호 단서 신설).
- 다.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 라.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함(제22조제1항·제3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12월 26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	--------------

● 법률 제1532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진단 및 후단 중 “연구·개발”을 각각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자동차제작자들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해체 금지”를 “해체·조작 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하여서는”으로 한다.

제4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제6항”을 “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